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의결사항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와 독촉·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의 송달 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366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 등의 서류를 우편송달하는 경우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조산아(早産兒) 등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 등 조정(안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해당 2인실·3인실의 입원료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함.

나. 건강보험료 감액 범위 확대(안 제45조의2)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우편송달의 방법 규정(안 제47조의4 신설)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와 독촉·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우편송달하는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라. 질병군별 입원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 2 제2호)

질병군별 입원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시 입원 일수와 관계없는 종전의 고정비율 개념 대신 입원 일수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는 등 환자와 의료인이 이해하기 쉽게 산정방법을 개선함.

마.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안 별표 2 제3호라목 및 하목)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감경 시 상한 설정(안 별표 5 제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8. 23. ~ 10.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을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5조의2 중 “자동계좌이체”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한다.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4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중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을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

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고정비율, 평균 입원 일수”를 “평균 입원 일수”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입원 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 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비고

1. 위 표에서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란 질병군별 평균 입원 일수만큼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입원 건당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란 입원 일수가 1일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을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의 표의 상급종합병원의 본인일부부담금란 중 “하목2)ㆍ3)”을 “하목”으로 하며, 같은 2)의 표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란 중 “하목2)ㆍ3)”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저체중

아”를 “저체중 출생아”로, “3년”을 “5년”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목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을 감경하거나”를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라목·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생 략)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2. ~ 5. (생 략) ④ ~ ⑥ (생 략)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의2(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4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18